[전산양식 A3359]

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

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(임의)경매

채 권 자

채무자(소유자)

공 유 자

매 각 기 일 20 . . . :

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

공유자는 민사집행법 제 14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까지(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 115 조 제 1 항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기 전까지) **민사집행법 제 113 조에 따른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**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합니다.

첨 부 서 류

1. 공유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1 통
2. 기타( )

20 . . .

우선매수신고인(공유자) (인)

(연락처 :)

○○지방법원 경매○계 귀중